

## 2026년도 퀀텀(양자)플랫폼 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실(JQL) 신규과제 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「퀀텀(양자)플랫폼지원사업」의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(JQL)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6일

<주무부처>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배 경 훈  
<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>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사업단장 한 상 욱

| 연<br>번 | RFP<br>관리번호     | RFP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<br>연구기간                   | 당해<br>연구기간               | 총<br>연구비*<br>(억원)    | 선정<br>과제수     | 과제<br>형태       | RFP<br>유형<br>코드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      | 2026-KISTJQL-01 | 양자 하드웨어 소자·부품·장<br>비 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            | '26.11.~'29.12.<br>(3년 2개월) | '26.11.~'26.12.<br>(2개월) | 과제 별<br>9.03억원<br>내외 | 3개 이내<br>(원칙) | 일반<br>연구<br>개발 | R06-1           |
| 2      | 2026-KISTJQL-02 | 양자 컴퓨팅 응용 소프트<br>웨어 및 시스템 프로그램<br>개발 양자공동연구실 | '26.11.~'29.12.<br>(3년 2개월) | '26.11.~'26.12.<br>(2개월) | 과제 별<br>9.03억원<br>내외 | 3개 이내<br>(원칙) | 일반<br>연구<br>개발 | R06-1           |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사업개요 .....             | 1  |
| 2. 공모과제 지원내용 .....        | 3  |
| 3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.....      | 4  |
| 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.....      | 8  |
| 5.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..... | 10 |
| 6. 선정평가 .....             | 12 |
| 7. 기타사항 .....             | 15 |
| 8. 향후일정[안] .....          | 17 |
| 9. 적용 법령 및 규정 .....       | 17 |
| 10. 문의처 .....             | 18 |

□ 사업명 : 퀀텀(양자)플랫폼 양자활용연구거점 양자공동연구실(JQL)

□ 추진배경

-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선점을 위하여 美·英·日 등 기술선도국들도 경쟁적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투자계획 발표
  - ※ 美, 「국가양자이니셔티브 법(NQI Act)」 서명('18.12) 및 최근 5년간 37억 달러(5조원) 투자/ 英 「국가양자 전략」 ('23.3) 및 10년간 25억 파운드(약 4조원) 투자 발표, 日, 「미래양자비전」 발표('22.4)
-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아직까지 기업들의 R&D 투자참여가 낮고 출연(연), 대학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산학연 간 초기 협력을 매개할 연구 프로젝트 및 인프라 필요
- 또한, 현재 양자 관련 일자리(진로)가 제한적인 가운데 어렵게 양성된 양자 인력이 타 분야로 이탈하지 않고 연구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

□ 사업 목적

-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양자기술활용형 또는 고도화형 공동연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, 양자기업 및 비양자기업에 양자기술 산업화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- 양자 하드웨어 및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등 양자활용기술 분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, 양자기술 또는 기업 수요 맞춤형 상용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

□ 사업 기간/예산(정부출연금): '26년~'29년 / 과제당 총 9.03억원 내외

- ※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, 연구비 조정 또는 과제중단 가능. 중단과제 발생 시, 중단 과제 수 만큼 신규 선정 가능
- ※ '27년 정부예산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과제수 및 예산은 변동(또는 축소)될 수 있으며, '27년 예산 추가 확보 시, 후순위 과제 추가선정 가능(추가선정과제의 개시일은 27년 1월 이후가 될 수 있음). 최종 선정 통보 시 연차별예산, 개월수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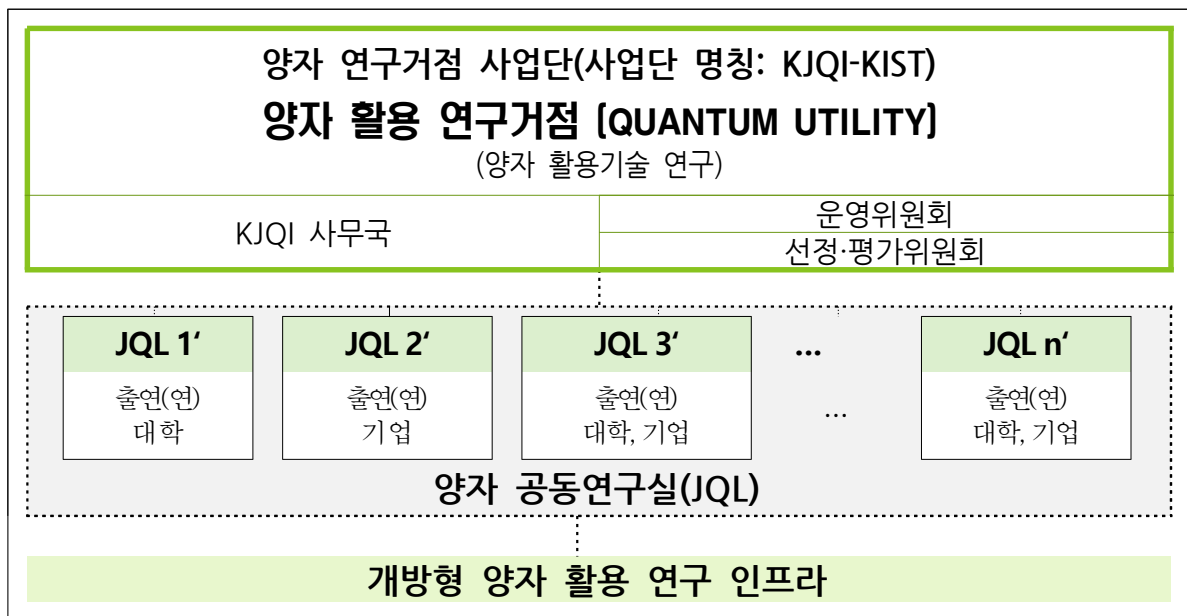
□ 사업 내용

- (양자활용연구) 양자활용연구는 양자 소자 시스템을 산업응용 목적에 맞게 개발하거나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컴퓨팅등 양자기술 기반 시스템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활용하는 연구를 의미함
- (공동연구) 출연(연), 대학,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·인력·인프라·산업수요를 연계하여 양자 하드웨어 및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등 양자활용기술 분야의 공동

연구를 지원

- **(인력양성)** 포스닥, 석·박사과정 학생, 기업 신규채용 인력 등 차세대 양자활용 연구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, 양자기술 전문 프로그래머, 양자컴퓨팅 알고리즘·소프트웨어 전문인력, 공정엔지니어 등 양자기술 또는 양자기업 맞춤형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추진
- **(인프라 활용)** KJQI가 보유·연계한 양자팜, 패키징, 측정·테스트베드 등 개방형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산·학·연 양자활용연구 수행 기반 강화
- **(상용화 성과 창출)** 산업 수요와 연계한 양자기술 고도화, 시제품·모형·실증 결과 등 상용화 연계 성과물 창출을 통해 양자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 제고

#### □ 사업수행체계



- **KJQI(Korea Joint Quantum Institute, 양자연구거점)**
  - 거점운영·인프라구축 수행, 세부과제의 구성 및 총괄관리
- **JQL(Joint Quantum Laboratory, 양자공동연구실)**
  - 출연(연), 대학, 기업 등이 연구주제 및 수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위
  - 양자활용기술의 산업 응용·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수행
- **개방형 연구 인프라**
  - 참여 산·학·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 시설 장비 제공\*으로 연구 집적도를 높이고 협력 연구를 활성화

\* 공동 장비 수요 발굴 및 사전검토, 운영위원회 승인 등 장비·설비 구축·운영 절차에 따름

※ KJQI 내 별도 공용공간에 설치되었으나 필요시 사업단 승인을 받아 특정 JQL에 설치 가능

## □ 사업수행 필수사항

- 선정된 JQL은 KJQI 사업단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**인력양성, 공동인프라 활용 및 상용화 성과물 창출**을 수행하여야 함
- 선정된 JQL은 출연(연) 또는 대학소속 **Post-Doc. 신규채용 인력**을 포함하여야 하며, 해당 인력은 본 과제 **인건비 계상률 50% 이상**으로 참여하여야 함
-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석사급 이상 인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인력을 신규 채용 해야 하며, 소속 참여연구원의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**최대 50% 이내**로 함
- **비양자 분야 청년 신규채용** 인력은 양자전환 인력양성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을 **100%까지 계상**할 수 있음

※ 인력양성 성과 인정 여부 및 세부 인정 기준은 RFP, 협약 및 사업단 인력양성 성과 관리 지침에 따름

## 2

## 공모과제 지원내용

### □ 지원 분야 : 총 5개 과제 이내 (RFP 별 3개 과제 이내 선정 원칙)

| 세부사업<br>(내역사업)          | RFP<br>번호       | 연구주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<br>연구비*<br>(억원)   | 선정<br>예정<br>과제 수 | 과제<br>형태       | RFP<br>유형<br>코드 | 보안<br>등급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양자활용연구거점<br>양자공동연구실(JQ) | 2026-KISTJQL-01 | 양자 하드웨어 소자·부품·장비<br>개발 양자공동연구실              | 과제별<br>9.03억원<br>내외 | 3개 이내            | 일반<br>연구<br>개발 | R06-1           | 일반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-KISTJQL-02 | 양자 컴퓨팅 응용 소프트웨어 및<br>시스템 프로그램 개발<br>양자공동연구실 | 과제별<br>9.03억원<br>내외 | 3개 이내            | 일반<br>연구<br>개발 | R06-1           | 일반       |

※ RFP별 3개 이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, 특정 RFP에서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체 선정(총 5개 이내) 범위내에서 타 RFP의 차순위 적격과제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.

### □ JQL 1개 과제 당 지원기간 및 연구비\*(정부출연금) 규모 ※전체 RFP 동일

| 구분     | 연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구비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총 연구기간 | 2026. 11. 1 ~ 2029. 12. 31.(14개월+24개월) | 9.03억 원 내외 |
| 1단계    | 2026. 11. 1. ~ 2027. 12. 31. (14개월)    | 3.63억 원 내외 |
| 1차년도   | 2026. 11. 1. ~ 2026. 12. 31. (2개월)     | 0.48억 원 내외 |
| 2차년도   | 2027. 1. 1. ~ 2027. 12. 31. (12개월)     | 3.15억 원 내외 |
| 2단계    | 2028. 1. 1 ~ 2029. 12. 31. (24개월)      | 5.4억 원 내외  |
| 3차년도   | 2028. 1. 1. ~ 2028. 12. 31. (12개월)     | 2.7억 원 내외  |
| 4차년도   | 2029. 1. 1. ~ 2029. 12. 31. (12개월)     | 2.7억 원 내외  |

※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,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, 예산 확보 상황, 평가결과 및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※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[붙임] RFP를 확인 바람.

### 3

##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### □ 신청자격

#### ○ 출연(연), 대학, 기업이 자유롭게 공동 구성

- JQL은 산·학·연 협력 및 인력양성 성과 창출을 위하여 출연(연), 대학, 기업 등 다양한 기관 간 공동구성을 권장

-비양자(양자전환) 연구자·연구실(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,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 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) 지원 가능

※ JQL 과제에서 양자/비양자(양자전환) 연구실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과제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를 기준으로 구분함.

#### ○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출연(연), 대학, 기업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#### 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

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
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
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
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

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
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
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
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#### 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시행령 제2조 제①항

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
3.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**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(이하 "특정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.

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
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의2. 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6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- 6의2.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#### ○ 연구책임자의 기본자격

- 상기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
※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시 정년 보장 임용확약서 등 서류를 공문으로 필수 제출

#### ※ 양자 공동연구실 책임자는 3책 5공\* 미적용

\*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 참여 수를 제한하는 규정.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, 연구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.

#### 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(기업만 해당)
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 [별표 2]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을 준용

※ 각 담당자는 공고시점에서의 최신 처리기준 확인 및 반영 필수(아래는 참고)

#### <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(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('24.12.30.)) >

※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불가 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/공사는 비적용)

|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① 기업의 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<br>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③ 「민사집행법」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<br>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 |  |
|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<br>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⑤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|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<br/>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<br/>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p> <p>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</p> <p>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</p> <p>※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,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p> <p>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</p> <p>※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</p> <p>※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,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</p> |
|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신청 제한사항

### <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>

- (참여제한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

단,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

※ 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 32조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 제 1항

- (인건비 계상률\*)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%\*\*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
\*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,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(산식 =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/ 연 급여)

\*\*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%(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),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%만 참여 가능

- (과제기획 참여자)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

## <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>

- (연구기관 구성 제한)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\*으로 구성해야 함

\* 동일기관 여부: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(협약시, 법인인증서 사용)

※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,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

※ (필수확인) 단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기관의 동일과제 수행 ( □ 가능 / ■ 불가능 )

- 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
※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'연구개발과제'별 적용

※ 상기 항목에서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기관의 동일과제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, 협약은 본원이 체결하되 부설기관 연구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

<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>

| 연구개발기관 구분    | 사례1 | 사례2        | 사례3        | 사례4        | 사례5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| A기관 | <b>A기관</b> | A기관        | <b>A기관</b> | A기관        |
| 공동연구개발기관1    | B기관 | <b>A기관</b> | <b>B기관</b> | B기관        | <b>B기관</b> |
| 공동연구개발기관2    | C기관 | B기관        | <b>B기관</b> | C기관        | C기관        |
| 위탁연구개발기관     | D기관 | D기관        | C기관        | <b>A기관</b> | <b>B기관</b> |
|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| 가능  | <b>불가능</b> | <b>불가능</b> | <b>불가능</b> | <b>불가능</b> |

## <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>

- (중복 신청 제한)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 내 1개의 JQL에 한하여 신청 가능

- 주관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책임자, 위탁연구책임자 중 1인이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
- 연구자별 1개 JQL에만 참여 권고

※ KRISS 차세대 양자연구거점 JQL에 기 선정되어 참여 중인 주관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책임자, 위탁연구책임자는 본 공고에 신청 및 참여할 수 없음. 또한 동일 시기에 공모되는 KRISS 차세대 양자연구거점 JQL과 KIST 양자활용연구거점 JQL 간 주관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책임자, 위탁연구책임자의 중복 신청 및 참여는 불가하며, 중복 신청 또는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함.

-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대상은 아니나 중복 참여를 지양할 것을 권고

- (유사과제 신청 제한)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
※ 차별성 검토 방법: [www.ntis.go.kr](http://www.ntis.go.kr) 로그인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차별성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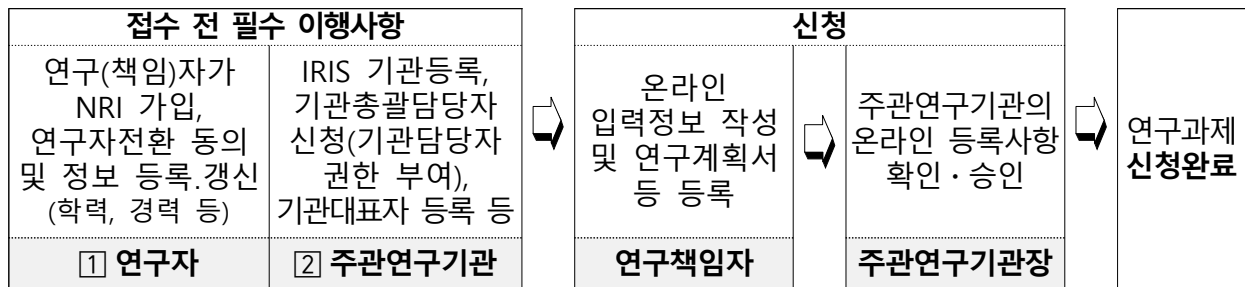
-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

## 4

##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- ※ (1)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(HWP)과 (2) 기타증빙 1개 파일(PDF)로 각각 업로드(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/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,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)



※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/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.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

※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정보 등록 필수

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\*\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- ※ ① and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- 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 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※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: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

- 시설장비 등록방법: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> [R&D고객센터]> [보유장비정보] 메뉴에서 등록

< 주관연구기관 선택 시 유의 사항 >

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
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-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
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<00대학교>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-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www.iris.go.kr>) 로그인 → 우측의 'R&D 업무포털'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-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상단의 '최종확인' 완료 이후 '제출'이 가능함.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  - ※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
- 과제 신청 시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'국책연구\_기획평가전문분야(국책연구사업)'를 선택하여야 함

## □ 제출서류

- 사업수행계획서(Part2) 및 증빙서류 일체

### <별첨 서류 목록>

| 구분  |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별첨1 | [필수] 기관 과제참여지원 협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별첨2 | [필수]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별첨3 | [필수] 개인정보·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/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         |
| 별첨4 | [필수]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 : Data Management Plan)(주관연구개발기관용) |
| 별첨5 | [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]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 및 현물출자 확약서                 |
| 별첨6 | [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]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계획                      |
| 별첨7 | [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]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            |
| 별첨8 | [해당 시]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

- 45쪽 이내로 작성

## 5

##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

## □ 신청기간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구책임자 신청 및<br>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기간 | <b>2026. 10. 06. (화) ~ 2026. 11 05. (목) 18:00까지</b><br><b>반드시 연구자 접수,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 되어야함</b> |
| 신청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**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등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**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

- **연구책임자** 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**연구개발기관** : [연구수행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함)
- **참고사항** :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,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(유효성검증 오류 등) **연구자 신청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**

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RFP별 응모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
  - ※ 단,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
  - ※ 접수 완료 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전문가 평가대상 과제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가 될 경우 재공고 미 실시
-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, Data Management Plan)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,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, 사후적으로 관련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건에 대한 평가결과는 무효 처리됨
- RFP 내 명시된 공동,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미 준수 시 평가 제외(사전검토 탈락)

- 선정·평가위원회, 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
-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, 지원중단, 조기종료 등 가능
-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(단,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)
-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

※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 (※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, 상시 모니터링 권장)
- 연구책임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7조,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\* 현황정보\*\*를 포함하여야 하고,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(권고) 현행화(IRIS 활용)

\* 국외수혜: 외국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·행정적(연구과제, 인력, 장비, 시설) 지원 및 강의·자문·검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(단순 문의·제안·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)

\*\* 지원·지급 출처, 사유, 기간, 내용,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

**시행령 제9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) ③**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8.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

-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/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,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(권장)

\*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 (’24.3, 한국연구재단) 참조

- (해당 시) 3천만원이상~1억원미만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
- 필수 제출 서류: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,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(단, 단일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)

※ [근거]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, 1억 원 미만 연구시설·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

※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’별도 심의 신청 필수

※ 계획서 상 ‘연구시설·장비 구축·운영 계획’에 관련 내용 명시

- (해당 시)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

※ 단,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,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·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

## □ 추진근거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,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선정)

## □ 기본방향

-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
-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,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
-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
  - ※ 평가점수가 60점 미만(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)은 탈락 처리함
-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,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
-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## □ 평가방법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7조에 따라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 과제평가단(이하 “평가위원회”)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, 온라인/현장평가로 진행 가능
  -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진행 가능
  - ※ 평가대상 과제 규모,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,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
  - ※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

- 평가항목 및 배점(차후 평가계획 수립 시, 일부 변경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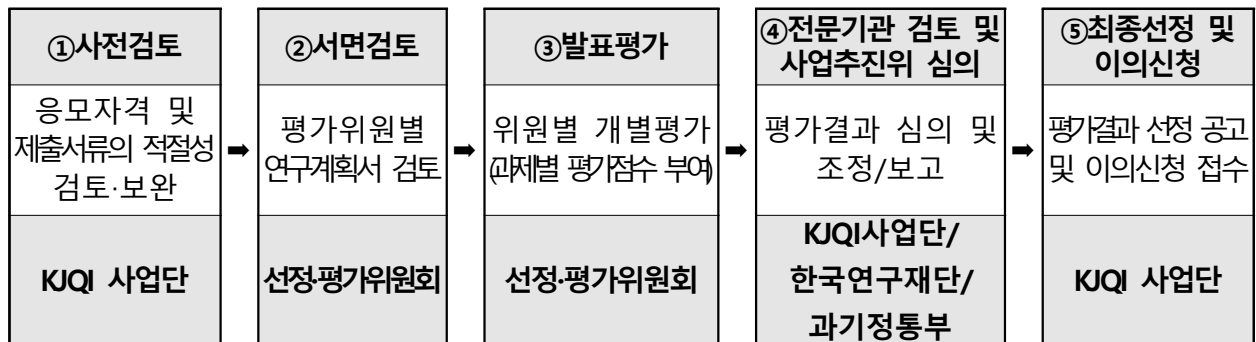
| 평가항목         | 평가 주안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연구계획<br>(5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내용 및 수행계획의 우수성</li> <li>-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의 중요성</li> <li>- 연구목표의 도전성과 연구내용의 실용성</li> <li>- 양자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 계획의 우수성</li> <li>- 양자전환(비양자)인력 재직 기관의 양자역량 확보 전략 우수성(해당시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 20 |
|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 수행체계의 타당성</li> <li>- 과제제안요구서(RFP)와 부합성 및 사업철학 반영 여부</li> <li>-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</li> <li>※ 양자 활용기술 연구 활성화에 부합하고 물리학 뿐만 아니라 타학제 분야(양자전환) 및 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JQL 연구과제 구성 필요</li> </ul> | 20 |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자인력 및 양자전환(비양자)인력 채용 및 활용 전략이 구체적이고 성과목표 초과 채용계획 제안 시 우대</li> <li>- 양자전환(비양자)인력 수행 연구내용의 적절성</li> <li>※ JQL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장비, 소재, 부품 등의 연구개발에 양자 전환(비양자)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를 명확화</li> <li>- 산업계 수요 기반 양자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업 참여 및 기업의 기술수요·실증환경·상용화 연계계획의 구체성·적절성(해당 시)</li> <li>- 지역 연구거점 활성화를 위한 주관기관 지역 분원과의 공동연구계획 및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·협력체계의 구체성·적절성(해당 시)</li> <li>- 신규 구축 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의 우수성(해당시)</li> </ul> |     |
|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JQL 내 참여기관 간 공동인력양성 및 인프라 공동 활용 계획의 우수성</li> <li>- 참여 인력(포스닥, 석·박사, 기업연구원)의 on-site(거점기관) 공동연구 계획의 우수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연구책임자<br>역량(30) | • 연구책임자의 연구 역량 및 발전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|
|                 | • 공동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발전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|
| 성과활용<br>(20)    | • 양자전환(비양자)인력의 양자인력 전환 후 활용 결과의 수월성 및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| • JQL의 발전 계획·비전 및 양자과학기술·산업에의 연구성과의 활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합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※ 선정평가 동점자 발생 시, 아래 우선순위 적용

1.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 우선
2. RFP별 우대사항 해당 과제 우선

## □ 평가절차



※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

- (사전검토)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,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

| 사전검토 항목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11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</li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,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 |

- (서류평가) 접수된 지원 JQL 개수가 선정 예정 개수의 2배수 이상인 경우, 별도의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- (선정·평가위원회 평가)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
  - 신청 과제는 JQL 단위로 평가하며,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및 수행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함
  - 산업계 수요 기반 양자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거나, 기업의 기술수요·실증환경·상용화 연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는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
  - 전체 JQL 과제 중 주관기관의 지역 분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제는 평가 결과 및 적격 여부를 고려하여 1곳 이상 우선 선정할 수 있음
    - ※ 단,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
  - 전체 JQL 과제 중 40% 이상은 비양자 연구자·연구실을 대상으로 선정
    - ※ 비양자(양자전환) 연구자·연구실: 정부 양자전용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, 새롭게 양자 연구로 진입하는 타 분야 연구자 또는 연구실
  - RFP별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,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있는 경우 RFP별로 동일한 수의 과제를 우선 선정함. 총 선정 가능 과제 수가 홀수인 경우 등 RFP별 선정과제 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RFP의 동일 차 순위 적격과제 간 선정평가 총점을 비교하여 고득점 과제를 우선 선정함.
  - RFP별 3개 이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, 특정 RFP에서 선정 가능한 적격과제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체 선정규모(총 5개 이내) 범위내에서 타 RFP의 차순위 적격과제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.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, 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실시
  - ※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
- 동점 발생 시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\* 고득점 순으로 선정

\* 평가항목 평가 점수: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

※ 선정평가 동점자 발생 시, 아래 우선순위 적용

1.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 우선

2. RFP별 우대사항 해당 과제 우선

-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, 연구 시설·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

※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적정성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,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적정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함

○ (이의신청)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

○ (인정 범위)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, 평가위원,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

## 7

## 기타사항

### <필수사항>

#### □ 연구과제 상세 계획

- 12개월 기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연 10억원 이상과제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서 최종협약 전 연구목표 및 내용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과제는 PM 과 연구자간 심층 논의를 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·보완하는 상세계획단계 추가 수행(해당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)

#### □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
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(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)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####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
제8조(연구노트의 작성)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(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)는 개인사업자,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, 사전조사·기획평가, 연구개발과제의 조정·관리, 인문·사회분야, 인력양성,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(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)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.

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,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·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,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특수관계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)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□ 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·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

□ (필수) 연구데이터 관리

○ 본 과제 선정 시, 「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‘데이터관리계획’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(계획서 첨부 양식)

※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

- 선정평가-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)을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·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

-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, 장소, 기간,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

※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(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, 논문·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)

□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

○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

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

○ 연차·단계·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

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

\*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)

○ 단계 및 최종평가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,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

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~17조

○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

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

## □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

## <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>

### □ 중소·중견·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

- 2026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·중견·대기업에 대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

#### <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>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중소기업인 경우           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 |
| • 중견기업인 경우           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 |
| • 공기업, 지방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 |

#### <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>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• 중소기업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 |
| •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|                    |
| •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|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% 이상 |
| • 공기업, 지방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            |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% 이상 |

## 8

## 향후일정

|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2026.10.6.(화) ~ 11.05.(목) | 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신청 마감일)   |
| 2026.10.6.(화) ~ 11.05.(목) | 주관연구기관 승인(IRIS) 완료   |
| 2026.11월 중                | 선정평가                 |
| 2026.11월 말                |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         |
| 2026.11월 말                | 양자공동연구실 선정통보 및 협약 추진 |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.

## 9

## 적용 법령 및 규정

□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근거법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, 연구지원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,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</li> <li>○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</li> <li>○ 기타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,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</li> </ul> |
| 관련규정 |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</li> <li>○ 2026년도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10

## 문의처

□ 문의 절차

※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”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의 전 확인 | 공고문,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문의순서    | <b>(1차) 연구자 → 주관연구기관에 문의</b><br>※ 공고내용을 숙지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관리부서에 문의 |
|         | <b>(2차) 주관연구기관 → 사업단(KQI)에 문의</b><br>※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사업단(KQI)에 문의   |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<https://msit.go.kr>) → 소식 → 사업공고
- 한국연구재단 (<https://www.nrf.re.kr>)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업공지

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 접속
  - 법, 규정, 규칙: 「자료실」 →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 → ‘공통 법·규정’,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’ 관련 규정 확인

□ 문의처: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| 이메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IRIS 시스템 관련 문의<br>(신청, 기관승인 등) | IRIS 콜센터(1877-2041)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RFP, 접수 및 양식 등 연구<br>관련 문의     | KIS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2-958-7253 | 026273@kist.re.kr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2-958-7255 | h24011@kist.re.kr |
| 평가 등 절차 관련 문의 등                | KIS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2-958-7253 | 026273@kist.re.kr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사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2-958-7255 | h24011@kist.re.kr |

※ 전화 문의가 많아 대응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,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

## 붙임 1. RFP

### 2. 연구개발계획서 양식, 중병서류 양식, 참고자료(신규공모 FAQ, IRIS 관련 매뉴얼 등)